

시 보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1572호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2016년 11월 7일 월요일

규 칙

-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30호(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) 3

고 시
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262호 (인천도시관리계획 (승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) 개발계획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) 33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263호 (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폐기물처리시설, 가스공급설비, 녹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) 38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265호 (인천도시관리계획(장고개근린공원 조성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안)) 40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266호 (인천도시계획시설 [남촌농산물도매시장녹지(경관녹지)]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) 48
-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-267호 (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) 75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-216호 (대지조성사업계획(변경)승인고시) 140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-217호 (대지조성사업계획(변경)승인고시) 141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-218호 (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고시) 142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-219호 (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) 143
-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-220호 (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) 150

공 고
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67호 (압류자동차 공매공고) 173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68호 (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) 181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69호 (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) 182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76호 (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처리공고) 183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77호 (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) 184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81호 (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) 185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82호 (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공고) 186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83호 (인천도시계획시설(선학공원)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·공고) 187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84호 (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) 195
- 인천광역시공고 제2016-1486호 (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) 196
-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16-3호 (조치명령서 공고) 197
-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6-8호 (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) 200
- 인천강화소방서공고 제2016-6호 (자율안전관리 우수소방대상물 공표) 201
-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6-238호 (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) 202

회								
람								



발행 : 인천광역시 편집 : 대변인실

입법예고

-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6-66호 (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 205

군 구

-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6-61호 (도시계획시설(시장 : 경운종합시장) 결정(변경 : 폐지) 및 도시계획
시설(공공공지) 결정 지형도면 고시) 218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-220호

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-285호(2015. 11. 02)로 변경·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, 「같은 법」 제1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 11월 07일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

◆ 변경사유

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, 건축물 허용용도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의제)을 하고자 함

◆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2조 각호의 사항

1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: 변경없음
가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(변경없음)
나.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(변경없음)
2.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: 변경없음

- 가. 개발사업의 목적 (변경없음)
- 나.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- 3.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: 변경없음
- 4. 개발사업시행기간 : 변경없음
- 5.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: 변경없음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 <붙임1>
- 8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: 변경 <붙임2>
 - ※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: 제28호 근린공원(센트럴파크) 조성계획 변경
- 9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 - 가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 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(☎032-453-7845) 에서 열람 가능
 - 나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 - 다. 지형도면고시는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16호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도서로 같음

<붙임1>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: 변경

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(변경)

1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(변경없음)

가. 교통시설 (변경없음)

나. 도시공간시설 (변경없음)

다. 유통 공급시설 (변경없음)

라. 공공·문화체육시설 (변경없음)

마. 환경기초시설 (변경없음)

2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(변경)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 · 건폐율 · 용적률 · 높이 · 배치 · 형태 · 색채 ·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■ 공동주택용지 (변경없음)

■ 근린생활시설용지 (변경없음)

■ 주상복합용지 (기정)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		
B1 B2 B3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 ◦운동시설(가목), 교육연구시설(다목 및 라목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		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 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		
	건폐율		◦50% 이하		
	용적률	B1블록		B2블록	B3블록
		450% 이하		650% 이하	600% 이하
	주거용 연면적 비율	B1블록		B2블록	B3블록
		50% 미만		80% 미만	80% 미만
	높 이	B1블록		B2블록	B3블록
		100m 이하		200m 이하	16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하도록 할 것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B1, B2블록에 쌈지형 공지설치 : 폭 15m 이상, 면적 300㎡ 이상으로 계획		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	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2-14호선 및 교통광장 변 - 6m : 중로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		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 세계획을 따름		

도면표시 원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D22 D23	용도	허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운동시설(가목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교육연구시설(학원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가목 및 라목)
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5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연면적 주거용비율		◦80% 미만
	높 이		◦17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의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주호동내 형태 :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(권장) ◦옥상부분 :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(물탱크, 엘리베이터실 등) 설치 ◦필로티 : 통경확보,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(권장)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46호선 및 중로 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
D24	용도	허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운동시설(가목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교육연구시설(학원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가목 및 라목)
		불허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5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연면적 주거용비율		◦90% 미만
	높 이		◦17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의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주호동내 형태 :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(권장) ◦옥상부분 :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(물탱크, 엘리베이터실 등) 설치 ◦필로티 : 통경확보,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층 이상 설치(권장)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46호선 및 중로 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G5-1 G5-3 G5-4 G5-5 G5-6 G5-11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 ◦운동시설(가목), 교육연구시설(학원) ◦판매시설(다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40% 이하
	용적률		◦250% 이하 : G5-11 ◦300% 이하 : G5-1 ◦350% 이하 : G5-3, G5-4, G5-5, G5-6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90% 미만
	높 이		◦70m 이하 : G5-11 ◦100m 이하 : G5-1 ◦160m 이하 : G5-3, G5-4, G5-5, G5-6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옥상부분 :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(물탱크, 엘리베이터실 등) 설치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46호선 및 중로 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
E5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◦운동시설(가목), 교육연구시설(다목 및 라목) ◦업무시설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5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80% 미만
	높 이		◦13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G4-1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업무시설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, 예식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60% 이하
	용적률		◦850% 이하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80% 미만
	높이		◦21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하도록 할 것 ◦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주호동내 형태 :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(권장) 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◦필로티 : 통경확보,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(권장)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대로1-9, 1-49호선변 - 6m : 대로1-45호선변 및 중로 1-196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 세계획을 따름

■ 주상복합용지 (변경)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				
B1 B2 B3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 ◦운동시설(가목), 교육연구시설(다목 및 라목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				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 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				
	건폐율		◦50% 이하				
	용적률	B1블록		B2블록		B3블록	
		450% 이하		650% 이하		600% 이하	
	주거용 연면적 비율	B1블록		B2블록		B3블록	
		50% 미만		80% 미만		80% 미만	
	높 이	B1블록		B2블록		B3블록	
		<u>140m 이하</u>		200m 이하		160m 이하	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하도록 할 것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B1, B2블록에 쌈지형 공지설치 : 폭 15m 이상, 면적 300㎡ 이상으로 계획				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				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2-14호선 및 교통광장 변 - 6m : 중로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				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 세계획을 따름				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D22 D23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운동시설(가목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교육연구시설(학원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가목 및 라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5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80% 미만
	높 이		◦17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주호동내 형태 :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(권장) ◦옥상부분 :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(물탱크, 엘리베이터실 등) 설치 ◦필로티 : 통경확보,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(권장)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46호선 및 중로 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
D24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운동시설(가목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교육연구시설(학원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가목 및 라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5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90% 미만
	높 이		◦17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주호동내 형태 :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(권장) ◦옥상부분 :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(물탱크, 엘리베이터실 등) 설치 ◦필로티 : 통경확보,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(권장)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46호선 및 중로 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G5-1 G5-3 G5-4 G5-5 G5-6 G5-11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◦업무시설 ◦운동시설(가목), 교육연구시설(학원) ◦판매시설(다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40% 이하
	용적률		◦250% 이하 : G5-11 ◦300% 이하 : G5-1 ◦350% 이하 : G5-3, G5-4, G5-5, G5-6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90% 미만
	높 이		◦70m 이하 : G5-11 ◦100m 이하 : G5-1 ◦160m 이하 : G5-3, G5-4, G5-5, G5-6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옥상부분 : 해당 건축물의 지붕높이 이하로 건축설비(물탱크, 엘리베이터실 등) 설치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46호선 및 중로 1-230호선 변 - 3m : 기타 도로변
E5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◦운동시설(가목), 교육연구시설(다목 및 라목) ◦업무시설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5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80% 미만
	높 이		◦13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G4-1	용도	허용 용도	◦공동주택 ◦업무시설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, 예식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, 장의사, 총포판매소, 안마원, 제조업소, 수리점
	건폐율		◦60% 이하
	용적률		◦850% 이하
	주거용 연면적 비율		◦80% 미만
	높이		◦210m 이하
	배 치		◦대지외곽부에는 저층건축물 계획하며,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하도록 할 것 ◦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형성 있는 가로벽 설치 ◦저층부에 비주거시설을 배치하고 고층부에는 주거시설 계획 ◦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를 유도
	형 태		◦주호동의 형태 : 탑상형은 1개층당 3호 이상 계획 ◦주호동내 형태 :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조성(권장) 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◦필로티 : 통경확보, 보행통로연결 등의 목적을 위한 필로티는 2개 층 이상 설치(권장)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대로1-9, 1-49호선변 - 6m : 대로1-45호선변 및 중로 1-196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 세계획을 따름

■ 국제업무용지 (기정)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B7, F7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%이상)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450% 이하 : F7 ◦650% 이하 : B7
	높 이		◦90m 이하 : F7 ◦150m 이하 : B7
	배 치		-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대로1-51호선변(B7블록) - 6m : 대로1-48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G1-2 G3-1 G3-2	용도	허용 용도	[G1-2] ◦업무시설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미용원, 세탁소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, 부동산중개사무소 ◦교육연구시설
			[G3-1] ◦업무시설 - 지정용도(오피스텔 불허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
			[G3-2] ◦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◦업무시설(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50% 이하)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, 수리점, 장의사, 총포판매소 제외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300% 이하 : G3-1, G3-2 ◦400% 이하 : G1-2
	높 이		◦60m 이하 : G3-1, G3-2 ◦90m 이하 : G1-2
	배 치		-
	형 태		◦G1-2블록의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으로 조성(단, 기단부 제외) ◦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 부서와 협의반영 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51호선변 및 중로1-230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B4-1 B4-2 B5 C1 C2 C3-1 C3-2 C4-2 C4-3 C5-1 C5-2 C6-1 C6-2 C7-1 C7-2 C8-1 C8-2 F1 F6-1 F6-2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- C4-2, C6-2, C8-1 :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%이상 - 지정용도 ※ 단, C8-1블록을 숙박시설-가목(건축연면적의 80% 이상) 및 전체를 숙박시설-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- F6-2 :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◦숙박시설(C8-1, F6-2블록에 한함) - C8-1 : 가목 및 나목 - F6-2 : 나목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위락시설(C2, C4-2, C4-3, C6-1, C6-2블록에 한함) ◦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-2블록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, 노래연습장(C2, C4-2, C4-3, C6-1, C6-2, C8-1, C8-2블록에 한함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500% 이하 : C2 ◦550% 이하 : C1 ◦600% 이하 : C3-1, C3-2, C4-2, C4-3 ◦700% 이하 : C6-1, C6-2 ◦750% 이하 : B4-1, B4-2, F6-1, F6-2 ◦800% 이하 : C5-1, C5-2, C8-1, C8-2 ◦900% 이하 : F1 ◦1,000% 이하 : B5, C7-1, C7-2
	높 이		◦75m 이하 : C4-2 ◦85m 이하 : C2 ◦100m 이하 : C1, C3-1, F6-2 ◦110m 이하 : C6-1 ◦125m 이하 : C3-2, C4-3, F6-1 ◦130m 이하 : B4-1 ◦140m 이하 : C5-1 ◦145m 이하 : B4-2, C6-2, C8-1 ◦150m 이하 : C5-2, C7-1 ◦155m 이하 : C8-2 ◦185m 이하 : F1 ◦205m 이하 : B5, C7-2
	배 치		◦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/5이상 접하여 3층 이상~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, 전면도로에 필로티,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. ◦쌈지형 공지 및 아트트리움 설치(B4, C3, C5, C7, F6 블록)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, 대로1-9, 1-49, 1-51호선변 - 6m : 대로1-43, 1-45, 1-48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F2 I2-1 I2-2 I6 I7 I8 I9 I10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- F2 :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%이상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, 예식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 ◦위락시설 (I2-1, I2-2, I6, I7, I8블록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, 노래연습장(I2-1, I2-2, I6, I7, I8, I9블록에 한함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
	건폐율		◦70% 이하 : I2-1, I2-2, I6, I7, I8, I9, I10 ◦80% 이하 : F2
	용적률		◦450% 이하 : I6, I7, I8, I9 ◦500% 이하 : I2-1, I2-2, I10 ◦800% 이하 : F2
	높 이		◦70m 이하 : I6 ◦75m 이하 : I9 ◦80m 이하 : I7 ◦85m 이하 : I8 ◦90m 이하 : I10 ◦100m 이하 : I2-1 ◦130m 이하 : I2-2 ◦145m 이하 : F2
	배 치		◦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/5이상 접하여 3층 이상~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, 전면도로에 필로티,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.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대로1-9, 1-49호선변 - 6m : 대로1-45호선변 및 중로 1-196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F3-1 F3-2 F3-3 F3-4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(F3-1블록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 ※ F3-1,2,3,4 획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경우, 각각의 획지에 건축 가능한 오피스텔 총량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획지에 통합건축이 가능하며, 나머지 획지의 건축 공정률이 40% 이상 도달한 경우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함 ※ F3-4 획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개설토록 함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600% 이하 : F3-1 ◦750% 이하 : F3-3 ◦950% 이하 : F3-2
	높 이		◦110m 이하 : F3-1 ◦150m 이하 : F3-3 ◦170m 이하 : F3-2
	배 치		◦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/5이상 접하여 3층 이상~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단, 전면도로에 필로티,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. (F3-2,3블록) ◦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 (F3-2,3블록)
	형 태		◦옥상부분 (F3-2,3블록)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1-2호선변 - 6m : 대로1-48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I3,I4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
	건폐율		◦70% 이하
	용적률		◦650% 이하
	높 이	I3블록	
		135m 이하	
	높 이	I4블록	
		125m 이하	
	배 치		-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간선도로변 - 3m : 집분산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E1-1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 ◦교육연구시설 ◦제1종 근린생활시설(가목, 나목, 바목)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(가목, 나목, 바목, 자목) ◦문화 및 집회시설(라목) ◦노유자시설(가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	◦6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높 이		◦160m 이하
	배 치		◦중앙공원 및 도로와의 관계 고려,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◦인접필지와 통합 또는 개별건축가능 ◦건축물 저층부(기단부)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
	형 태		◦시설별 성격 부각,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: 9m

■ 국제업무용지 (변경)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계 획 내 용
B7, F7	용도	허용 용도 ○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%이상) - 지정용도 ○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○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
		불허 용도 ○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 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풂사목(청소년게입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입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입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, 너록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
	건폐율	○80% 이하
	용적률	○450% 이하 : F7 ○650% 이하 : B7
	높 이	○90m 이하 : F7 ○150m 이하 : B7
	배 치	-
	형 태	○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○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대로1-51호선변(B7블록) - 6m : 대로1-48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○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G1-2 G3-1 G3-2	용도	[G1-2] ○업무시설 - 지정용도 ○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○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○교육연구시설
		[G3-1] ○업무시설 - 지정용도(오피스텔 불허) ○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○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
		[G3-2] ○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○업무시설(오피스텔은 건축연면적의 50% 이하) ○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○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, 전시장에 한함) 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
	불허 용도	○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풂사목(청소년게입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입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입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, 너록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
	건폐율	○80% 이하
	용적률	○300% 이하 : G3-1, G3-2 ○400% 이하 : G1-2
	높 이	○60m 이하 : G3-1, G3-2 ○90m 이하 : G1-2
	배 치	-
	형 태	○G1-2블록의 건축물 형태는 탑상형으로 조성(단, 기단부 제외) ○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 특화방안을 도시경관 부서와 협의반영 ○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○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- 6m : 대로1-51호선변 및 중로1-230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○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B4-1 B4-2 B5 C1 C2 C3-1 C3-2 C4-2 C4-3 C5-1 C5-2 C6-1 C6-2 C7-1 C7-2 C8-1 C8-2 F1 F6-1 F6-2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- C4-2, C6-2, C8-1 :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%이상 - 지정용도 ※ 단, C8-1, <u>C1, C2</u>블록을 숙박시설-가목(건축연면적의 80% 이상) 및 전체를 숙박시설-나목으로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- F6-2 :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과 복합 개발할 경우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연면적 비율제한 없음 ◦숙박시설(C8-1, F6-2, <u>C1, C2</u> 블록에 한함) - C8-1, <u>C1, C2</u> : 가목 및 나목 - F6-2 : 나목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위락시설(C2, C4-2, C4-3, C6-1, C6-2블록에 한함) ◦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로 C4-2블록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)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제1·2종 근린생활시설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 ◦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소, 사목(청소년게입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입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입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,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 ※ 단, C2, C4-2, C4-3, C6-1, C6-2, C8-1, C8-2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500% 이하 : C2 ◦550% 이하 : C1 ◦600% 이하 : C3-1, C3-2, C4-2, C4-3 ◦700% 이하 : C6-1, C6-2 ◦750% 이하 : B4-1, B4-2, F6-1, F6-2 ◦800% 이하 : C5-1, C5-2, C8-1, C8-2 ◦900% 이하 : F1 ◦1,000% 이하 : B5, C7-1, C7-2
	높 이		◦75m 이하 : C4-2 ◦100m 이하 : C3-1, F6-2 ◦110m 이하 : C6-1 ◦125m 이하 : C3-2, C4-3, F6-1 ◦130m 이하 : B4-1, <u>C1, C2</u> ◦140m 이하 : C5-1 ◦145m 이하 : B4-2, C6-2, C8-1 ◦150m 이하 : C5-2, C7-1 ◦155m 이하 : C8-2 ◦185m 이하 : F1 ◦205m 이하 : B5, C7-2
	배 치		◦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/5이상 접하여 3층 이상~6층 이하의 기단부 조성 - 단, 전면도로에 필로티,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. ◦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(B4, C3, C5, C7, F6 블록)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65호 교통광장변, 대로1-9, 1-49, 1-51호선변 - 6m : 대로1-43, 1-45, 1-48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F2 I2-1 I2-2 I6 I7 I8 I9 I10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- F2 : 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60%이상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, 예식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 ◦위락시설 (I2-1, I2-2, I6, I7, I8블록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 ◦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소, 사목(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,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 ※ 단, I2-1, I2-2, I6, I7, I8, I9 블록에 한하여 노래연습장 허용
	건폐율		◦70% 이하 : I2-1, I2-2, I6, I7, I8, I9, I10 ◦80% 이하 : F2
	용적률		◦450% 이하 : I6, I7, I8, I9 ◦500% 이하 : I2-1, I2-2, I10 ◦800% 이하 : F2
	높 이		◦70m 이하 : I6 ◦75m 이하 : I9 ◦80m 이하 : I7 ◦85m 이하 : I8 ◦90m 이하 : I10 ◦100m 이하 : I2-1 ◦130m 이하 : I2-2 ◦145m 이하 : F2
	배 치		◦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/5이상 접하여 3층 이상~6층 이하의 기단 부 조성 단, 전면도로에 필로티,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.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변 및 대로1-9, 1-49호선변 - 6m : 대로1-45호선변 및 중로 1-196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 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F3-1 F3-2 F3-3 F3-4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(F3-1블록에 한함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※ F3-1,2,3,4 획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는 경우, 각각의 획지에 건축 가능한 오피스텔 총량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획지에 통합건축이 가능하며, 나머지 획지의 건축 공정률이 40% 이상 도달한 경우에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함 ※ F3-4 획지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개설토록 함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 ◦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소, 사목(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,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600% 이하 : F3-1 ◦750% 이하 : F3-3 ◦950% 이하 : F3-2
	높 이		◦110m 이하 : F3-1 ◦150m 이하 : F3-3 ◦170m 이하 : F3-2
	배 치		◦전면도로변 건축한계선의 3/5이상 접하여 3층 이상~6층 이하의 기반부 조성 - 단, 전면도로에 필로티, 아케이드 조성시에도 건축한계선에 접한 것으로 본다. (F3-2,3블록) ◦쌈지형 공지 및 아트리움 설치 (F3-2,3블록)
	형 태		◦옥상부분 (F3-2,3블록)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- 9m : 광로1-2호선변 - 6m : 대로1-48호선변 - 3m : 기타 도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 세계획을 따름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I3,I4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부분이 건축연면적의 70%이상) - 지정용도 ◦판매시설(나목 및 다목) ◦운동시설(가목), 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숙박시설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,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㎡미만인 오피스텔 ◦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소, 사목(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교시원),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
	건폐율		◦70% 이하
	용적률		◦650% 이하
	높 이	I3블록	
		135m 이하	
	높 이	I4블록	
		125m 이하	
	배 치		-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E1-1	용도	허용 용도	◦업무시설 ◦교육연구시설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◦문화 및 집회시설(라목) ◦노유자시설(가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소, 사목(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교시원), 너목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
	건폐율		◦6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높 이		◦160m 이하
	배 치		◦중앙공원 및 도로와의 관계 고려, 옥외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◦인접필지와 통합 또는 개별건축가능 ◦건축물 저층부(기단부)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할 것
	형 태		◦시설별 성격 부각,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: 9m

■ 상업시설용지 (기정)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F8	용도	허용 용도	◦판매시설(건축연면적의 60%이상) - 지정용도 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 - 1종 근린생활시설 : 슈퍼마켓과 일용품점,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, 이용원, 의원 및 치과의원 - 2종 근린생활시설 :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서점, 체력단련장, 금융업소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높 이		◦30m 이하
	배 치		-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: - 6m : 대로변 - 3m : 중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■ 상업시설용지 (변경)

도면표시 번 호	구 분		계 획 내 용
F8	용도	허용 용도	◦판매시설(건축연면적의 60%이상) - 지정용도 ◦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 ◦제1· 2종 근린생활시설 ◦문화 및 집회시설(공연장 및 전시장에 한함) ◦운동시설(가목)
		불허 용도	◦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◦제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, 아목(변전소, 양수장, 정수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 ◦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, 총포판매소, 사목(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장의사, 옥외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,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, 너독(제조업소, 수리점,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), 단란주점, 노래연습장
	건폐율		◦80% 이하
	용적률		◦350% 이하
	높 이		◦30m 이하
	배 치		-
	형 태		◦옥상부분 :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
	건축선		◦건축한계선 : - 6m : 대로변 - 3m : 중로변
	기 타		◦배치, 형태, 색채, 조명, 옥외광고물, 기타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상세계획을 따름

- 교육시설용지 (변경없음)
- 공공청사용지 (변경없음)
- 문화시설용지 (변경없음)
- 체육시설용지 (변경없음)
- 체육시설용지(단독주택) (변경없음)
- 종합의료시설 (변경없음)
- 복합환승센터 (변경없음)
- 사회복지시설 (변경없음)
- 주유소용지 (변경없음)
- 주차장 (변경없음)
- 하수도(오수중계펌프장) (변경없음)
- 전기공급설비(변전소) (변경없음)
- 폐기물처리시설(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) (변경없음)
- 숙박시설용지(호텔) (변경없음)
- 관광숙박시설용지(호텔) (변경없음)
- 기타용지 (변경없음)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라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②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